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11. 24.(화) 국무회의 종료 시

“내달 3일부터 질병휴직 대신 ‘난임휴직’ 쓴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령」 국무회의 의결, 12월 3일부터 시행

내달 3일부터 난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대신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난임휴직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 질병휴직과 난임휴직 비교 】

구 분	종전 (질병휴직)	신설 (난임휴직)
휴직 유형	임용권자가 판단(직권휴직)	본인이 신청(청원휴직)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
휴직 사유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및 이에 준하는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
기 간	1년 이내 + 1년의 범위에서 연장	1년 이내 +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계획에 따라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난임휴직을 별도의 청원휴직으로 신설했고,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휴직신청은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및 이에 준하는 난임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휴직을 허가해야 하지만, 출산하려는 자녀에 대한 난임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행일에 맞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공무원 임용규칙」 등 행정규칙도 개정해 휴직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 등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휴직 중 임신한 경우, 임신 12주까지 난임휴직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아이를 낳으려는 공무원에게 난임휴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난임휴직 신설로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고 키우는 일이 부담되지 않는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5-3341)
		담당자	서기관	김정민 (044-205-3347)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은경 (044-201-8310)
		담당자	사무관	서지원 (044-201-8294)
		담당자	사무관	박재현 (044-201-83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